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의안 번호 | 제17호 |
|----------|-------------|
| 의결 | 2006. 9. 15 |
| 년월일 | (제130회) |

제출년월일 : 2006. 8. 31

제 출 자:의회운영위원장

□ 제안이유

○ 주5일 근무제 시행, 부천시 조직개편 등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운영을 위해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세부적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○ 부천시의회의 대 집행기관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7일간 실시하도록 변경함 (안 제2조제2항)

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"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"를 "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"로 한다.

제2조제2항중 "7일 이내"를 "토요일과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에서 정한 공휴일을 제외한 7일 이내"로 한다.

제16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중 "각호의 1"을 "각 호의 어느 하나"로 하고, 동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동조 제4항중 "국내여비규정"을 "「국내여비규정」"으로 한다.

1. 「부천시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」제2조가 정하는 공무원

제1조중 "지방자치법"을 "「지방자치법」"으로 하고, 제6조제1항제5호중 "지방공기업법"을 "「지방공기업법」"으로 하며,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3항중 "형사소송법"을 각각 "「형사소송법」"으로 하고, 제24조중 "부천시의회회의규칙"을 "「부천시의회 회의 규칙」"으로 하며, 제26조중 "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와 부천시의회의규칙"을 "「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」와 「부천시의회 회의 규칙」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했 정 아 개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한조례 에 관한 조례 제2조(감사) ① (생 략) 제2조(감사) ① (현행과 같음) ②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 ②-----례회 기간중 7일 이내로 실시하 ----- 토요일과 「관 되,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 - 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| 에 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서 정한 공휴일을 제외한 7일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이내-----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 한다. ③~⑤ (생략) ③~⑤ (현행과 같음) 제16조(여비 등 비용지급) ① (생 제16조(여비 등 비용지급) ① (현 략) 행과 같음)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②---각호의 어느 하나 -----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 다. 1. 「부천시의회에 출석・답변 할 1.시장 및 시의회에 출석ㆍ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 에 관한 조례 제2조가 정하는 한 조례 : 제2조가 정하는 공무원 공무원 2 · 3. (현행과 같음) 2 · 3. (생략) ③ (생략) ③ (현행과 같음)

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|
| ④ |
| <u> </u> |
| ⑤·⑥ (현행과 같음) |
| |
| |
| |
| |
| |
| |
| |